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가단51440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담

담당변호사 김동욱, 이중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조장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준호

변 론 종 결 2021. 5. 7.

판 결 선 고 2021.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67,085,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005,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6. C에게 6,0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10.85%, 연체이율 연 13.85%, 만기일 2022. 5. 25.,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은 2018. 7. 25.부터 위 대여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대여계약을 해지하였다. C의 원고에 대한 2020. 5. 26. 기준 잔존채무원리금은 67,085,320원(= 원금 53,005,412원 + 연체이자 8,812,051원 + 가지급금 5,267,857원)이다.

다. C은 2013. 3. 22.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9. 1. 8.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라. C은 2018. 7.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7. 30. 접수 제133782호)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의 채권 한도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대여원금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재산분할 합의와 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재산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단순한 매매계약이 아니라 피고와 C 사이의 공동재산의 분배, 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거나 단지 재산분할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원고와 C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혼 당시 만 4세)을 두었는데, 이혼 후 자녀 양육은 피고가 하기로 하였다.
- ②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C이 대출받으면서 설정한 주식회사 D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잔존하고 있었고, C이 국세를 체납하여 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8. 8. 8. E조합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합계 280,928,793원을 대신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 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취득한 가액은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38,617,287원(= 거래가액 319,546,080원 - 280,928,793원)이다.
- ③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C은 혼인 기간 중 도박에 빠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혼의 귀책사유가 C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은 2015.경 피고에게 도박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일으켜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④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교사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C의 소득은 피고 급여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유지에 상당한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미정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면 적 : 제6층 호 84,761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35406.7㎡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35406.7분의 64.7531